

정부공사 기타경비율 최고 0.4%p 올려

조달청이 정부시설공사에 대한 원가산정시 적용하는 기타경비율이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최고 0.4% 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조달청은 최근 각종 공공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 등의 '95년제경비율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및 일반관리비의 산정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비해 기타경비율은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조정됐다.

건축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규모 공사의 기타경비율이 공기에 따라 4.4~5.3%로 전년보다 0.1~0.4% 포인트 높아진 것을 비롯 대부분 상향조정됐으나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로 공기 37개월 이상 공사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공사비 200억원 이상 규모로 공기가 37개월 이상인 공사의 기타경비율은 6.1%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낮아졌다.

또 토목공사에 대한 기타경비율도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대부분 0.3% 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됐으나 공기가 37개월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0.1~0.3%포인트 하향조정됐다.

한편 조달청은 철강재 설치·조경·준설공사 등 특수공사에 대한 기타경비율을 토목이나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토목이나 전문공사 보다 공사규모와 공기에 따라 0.1~0.2% 포인트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규모 분류도 공사비를 기준으로 지난해 ■ 5억원 미만 ■ 5억원~30억원 미만 ■ 30억원~50억원 미만 ■ 50억원~200억원 미만 ■ 100억원~2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등 6개 분류로 세분화했다.

調達廳, 공사 원가계산적용 노임 建協 단가서 평균 9.6% 감액

조달청은 올해 정부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를 당초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단가에서 직종별로 평균 9.6% 감액 조정한 선에서 결정,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공사 원가계산에 있어서 노임단위당 가격은 건협이 조사·발표한 단가를 기준으로 ±15% 조정, 적용하게 됨에 따라 올 정보공사 노임단가를 건협 발표단가에서 직종별로 0~15% 감액 조정한 수준에서 결정함에 따라 조달청 건설노임단가는 평균 4만9천 6백98원으로 건협 발표단가 5만5천4원보다 9.6%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계는 건협 발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道公, 通信公社, 강원도 등과 달리 조달청이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제값 받아 건설시공에 힘쓰자』는

'95적용 재경비율(건축공사)

(단위:%)

구 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직노)×율	기타경비 (제+노)×율	안전관리비 (제+직노+관급자제)×율	산재보험료 (노)×율	일반관리비 (재+노+경)×율
5억미만 간접노무비 재+직노+ 기타 경비 산출경비 일반관리비:재+노+경 안전관리비:재+직노	6개월 이하(183일)	13.8	4.4	2.48	◆ 일반건설 * 갑:2.8 (을:2.7)	6.0 ◆ 전문공사 · 5천만원미만:6.0 · 3억미만:5.5 · 3억이상:5.0
	7~12개월(365일)	14.5	4.6			
	13~36개월(1,095일)	15.1	5.3			
	37개월이상(1,096일)	15.1	5.2			
5억~3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4.1	4.7	1.81+ 3,294,000원 (기본비용)	◆ 일반건설 * 갑:2.8 을:2.7)	5.5
	7~12개월(365일)	14.8	4.9			
	13~36개월(1,095일)	15.5	5.6			
	37개월이상(1,096일)	15.5	5.5			
30억~5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4.5	4.8	1.88	◆ 일반건설 * 갑:2.8 (을:2.7)	5.0
	7~12개월(365일)	15.1	5.0			
	13~36개월(1,095일)	15.8	5.7			
	37개월이상(1,096일)	15.8	5.6			
50억~10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4.5	5.3	1.88	◆ 일반건설 * 갑:2.8 (을:2.7)	5.0
	7~12개월(365일)	15.1	5.5			
	13~36개월(1,095일)	15.8	6.2			
	37개월이상(1,096일)	15.8	6.1			
100억~20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14.5	5.6	1.88	◆ 일반건설 * 갑:2.8 (을:2.7)	5.0
	7~12개월(365일)	15.1	5.8			
	13~36개월(1,095일)	15.8	6.5			
	37개월이상(1,096일)	15.8	6.4			
200억원 이상	6개월이하(183일)	14.5	5.3	1.88	◆ 일반건설 * 갑:2.8 (을:2.7)	5.0
	7~12개월(365일)	15.1	5.5			
	13~36개월(1,095일)	15.8	6.2			
	37개월이상(1,096일)	15.8	6.1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안전관리비** : -재료비는 직접재료비+관급재료비(부가가치세 제외)
-(재료비+직접노무비)×적용요율×1.2배를 초과못함.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시설 등
" <을> : 기계장치 공사

● **수의계약시 적용**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관련업체 재무제표 분석결과 상기를 비교하여 낮은율 적용

건설업계의 부실추방 노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올해 적용할 정부공사 노임단가 수준이 작년 정부노임 단가 수준보다 직종별로 평균 23.66%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노임이 상당폭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올 시중노임의 상승폭이 전년대비 5% 미만에 그침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정부시설공사 노임단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기 계속공사에는 적용치 않고 올 신규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플랜트 건설공사업종 신설 전망

일반건설업에 플랜트건설공사업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향렬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장장은 최근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 및 교통사고 방지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고도의 복합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설비 건설공사의 기술축적과 이를 토대로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플랜트건설공사업을 일반건설업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까지 업종신설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한 뒤 8월 이전에 간담회 등을 열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늦어도 금년내에는 플랜트건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 협의 및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95년 조달청 조정 정부시설공사 설비주요직종 노임단가표 (단위: 원)

직종명	조정금액	건협발표단가	(%)
보일러공	42,900	46,595	7.9
배관공	42,000	42,008	0.0
온돌공	38,400	44,297	13.3
위생공	41,900	42,960	2.5
보온공	38,200	43,313	11.8
플랜트기계설치공	52,600	61,934	15.1
플랜트특수용접공	61,400	63,933	4.0
플랜트용접공	53,400	61,357	13.0
플랜트배관공	51,400	55,703	7.7
플랜트제관공	49,800	51,591	3.5
기계설치공	42,000	49,313	14.8
덕트공	38,800	42,678	9.1

건교부가 이처럼 업종신설을 통해 플랜트 건설산업을 종합 육성키로 한 것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신흥공업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활성화시책으로 관련부문의 해외건설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설계 능력과 시공기술은 모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특히 미국의 빅텔사를 비롯한 프랑스의 테크니가즈, 일본의 치요다 등 선진국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노동집약적인 토목·건축공사 대신 부가가치가 큰 산업설비 건설에 주수역량을 집중시켜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춰 고도의 플랜트 설계·시공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업종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플랜트건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건설공사에 대한 기술·가격분리입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종합대책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다.